KOSHA GUIDE

C - 15 - 2017

- (4) 작업계획서에는 관로매설공사 시 근로자 안전보건 공통사항으로서 차량계 하역운반 기계 및 건설기계에 의한 안전·보건 확보계획, 안전표지(금지, 경고, 지시, 안내)부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계획서는 적용할 관로매설공사의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가 수립하여야 하며, 관리감독자는 공사 진행 중 수립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(6) 그 밖의 사항은 KOSHA GUIDE C-39-2011(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), KOSHA GUIDE C-37-2011(지하매설물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), 국토 교통부의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에 따른다.

5. 관로매설공사 작업별 안전보건조치 사항

5.1 포장절단 및 운반작업

- (1) 포장 절단작업 전 좌표측량에 의한 관로동선을 관리감독자와 협의하고 결정한다.
- (2) 작업장소에 상·하수도관, 도시가스관, 전기·정보통신관, 열배관 등 지장물의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고, 포장 절단작업을 할 때에는 포장하부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(3) 절단기의 작동상태 및 방호설비 부착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- (4) 절단 작업 시 절단기의 냉각수의 주입상태, 절단날의 덮개 상태를 확인하고 절단날 파손 시 파편이 비래할 위험이 있는 방향에는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(5) 도로측면 작업 시 작업구역 주변에 안전표지판, 경고등, 방호울타리 등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6) 작업 중에는 교통신호 및 통제를 위한 신호수와 절단기, 굴삭기, 덤프트럭 등 장비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하며, 지시·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